#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7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서미화·진성준·조계원

문진석 • 박지원 • 강준현

권향엽 · 김남근 · 소병훈

김영환 • 권칠승 • 전현희

백혜련 • 김현정 • 윤종군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·가 공·사용·조리·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 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.

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	제7조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		
관한 기준 및 규격) ① 식품의	관한 기준 및 규격) ①		
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			
보호・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			
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			
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			
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			
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		
	<u>장은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</u>		
	<u>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</u>		
	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		
	<u>하여야 한다.</u>	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